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23-79 관련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3. 6. 15.

발 의 자 :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행정에서의 만 나이 정착을 위하여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2023. 6. 28.부터 시행됨에 따라 “만” 표기를 삭제하고자 함.

## 2. 수정 주요내용

제2조제1호 중 “만 19세”를 “19세”로 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만 19세”를 “19세”로 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청년”이란 <u>만 19세</u> 이상 34세 이하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마포구”라 한다)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.</p> <p>2. “청년 문화예술”이란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----- <u>19세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(원안과 같음)</p>